위 임 장

회 사 명 : SHD THANH CONG

대 표 : PHAN DINH KHOA

기 간 : 2025년 12월 23일부터 ~ 2026년 12월 22일 (1년)

본교는 상기 협약기관에 유학생 입학을 위한 홍보, 모집, 한국어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유학생 업무협력 협약서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와 SHD THANH CONG(이하 "협약 기관" 이라 한다)는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유학생 유치에 관한 대학과 협약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대학과 협약기관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1. 대학의 의무
 1) 대학은 유학생 모집을 위한 각종 홍보자료를 "협약기관"에 제공한다.
 2) 대학은 필요 시 협약기관에 "대학"을 대신하여 해당 지역에서 유학생 모집 권한을 위임한다.
 3) 대학은 협약기관이 신청하는 유학생 서류에 대한 입학 심사를 실시하며, 입학 심사에 통과한 학생의 사증 신청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제공한다.

2. 협약기관의 의무
 1) 협약기관은 대학을 대신하여 우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학생 유치에 최선을 다한다.
 2) 협약기관은 대학이 요구하는 모든 입학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며 이 자료의 신뢰도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협약기관은 대학이 요청할 시 현장 면접을 포함하여 유학생 모집 관련 업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필요 시 대학과 공동으로 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4) 대학에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유학생 유치 기준)

협약기관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유학생을 유치해야 하며 대학이 추가 규정을 제정할 시 이에 따라야 한다.

1.고등학교 졸업 혹은 동등 학력 이상인 자
2.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춘 자
3.학위과정 사증 발급 및 체류자격변경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자
4.기타 대학이 정한 유학생 모집 요강 등에 부합하는 자

제4조(제반 비용)

협약기관은 수업료를 포함하여 대학이 요구하는 제반 비용을 납부한다.

1. 협약기관은 대학이 규정하는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2. 대학은 외국인 학생 장학금 내규에 의거하여 협약기관이 유치한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3. 협약기관이 대학 홍보에 필요한 경비에 관련하여 비용 청구를 할 경우 협약기관에서 산출한 경비에 대하여 대학은 검토 후 지급이 타당할 경우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

1. 협약기관은 본 협약 내용 및 업무 집행 시 취득한 상대방 기관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협약기관은 사증번호를 비롯하여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3. 협약기관은 본 협약이 끝난 이후에도 2항에 관하여 의무를 가진다.

제6조(협약이행)

1. 대학과 협약기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협약기관은 공동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사항을 대학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협약기관이 부담한다.
 협약기관은 협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를 준수한다.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대학과 협약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종료 시점 상호 합의하에 재계약 가능)
유효기간 만료 시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도 어느 일방에서 해지 의사를 표명한 경우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 기명 날인하여 대학과 협약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12월 23일

SHD THANH CONG

대 표 : PHAN DINH KHOA

예원예술대학교

총 장 고 광 모